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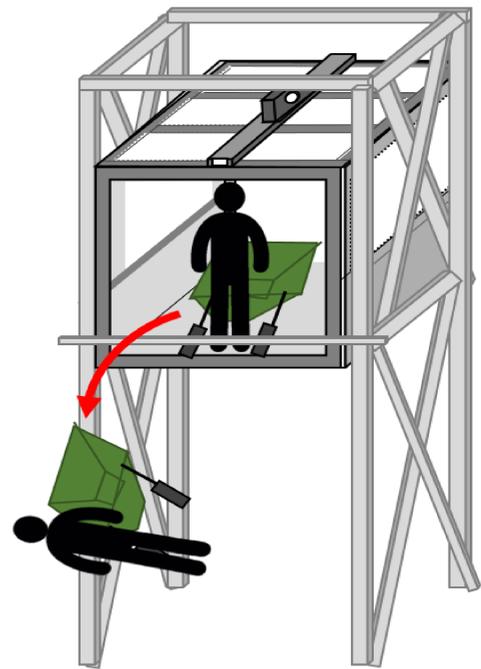
리프트에 탑승하여 화물 운반 작업 중 떨어짐



재해개요

2023. 05. 00.(화) 양주시 0000에서 재해자가 1층에서
빈 수레와 함께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2층으로
올라가던 중 출입문 및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은
운반구 전면부로 떨어짐

※ 승강로 수평지지대에 수레의 손잡이가 걸려 뒤집어지며
재해자가 수레와 함께 운반구 밖으로 떨어짐



발생원인

- ▶ 일반작업용 리프트(산업용 리프트)에 근로자 탑승 제한조치 미실시
 -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(산업용 리프트)에 탑승금지 경고표시 미부착, 근로자 교육 미실시 등 근로자 리프트 탑승 제한 조치를 미실시
- ▶ 리프트 운반구에 출입문 및 방호울 미설치
 - 리프트 운반구 화물 반입·반출구에 출입문 및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아 운반구 내 화물이 승강로의 수평지지대에 걸려 수레가 운반구 밖으로 낙하하며 재해자가 함께 떨어짐
- ▶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 사용
 - 운반구 출입문 및 방호울, 승강로 방호울, 출입문 연동장치 설치 등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여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실시

예방대책

- 1 일반작업용 리프트(산업용 리프트)에 근로자 탑승 제한 조치
 - 일반작업용 리프트(산업용 리프트)은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
 -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탑승금지 경고표지 부착, 근로자 교육 실시 등의 탑승 제한 조치를 실시
- 2 리프트 운반구에 출입문 및 방호울 설치
 - 리프트 운반구에 출입문 및 방호울을 설치하여 화물의 낙하를 방지
- 3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리프트 사용
 - 안전인증을 받은, 즉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리프트를 사용하여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

※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41 「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」에 따라 기존 「일반작업용 리프트」가 삭제되고, 「산업용 리프트」가 신설되었으나, 고시 시행(2020. 7. 17.) 이전 설치한 리프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.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